발달장애 수용자 처우 매뉴얼

- 인권침해 예방·보호 및 절차적 권리보장 중심 -

교정본부 의료과

Ⅰ 발달장애인의 정의(범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발달장애인법)」 제2조(정의)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제1항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등을 말함

❍ (지적장애인, F70~F79)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 (자폐성장애인, F80~F89)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그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발달장애인법 시행령에 구체적 기준이 불비하여, **현재 법률상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2가지임**

Ⅱ 발달장애 수용자 관리업무 개관

1 발달장애 수용자 관리업무 기본적 이해

○ (발달장애인 이해의 중요성)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 타인으로부터 자극받거나 놀라는 상황에서 보이는 **도전적 행동**(돌발행동이라고도 함)**을 발달장애인의 비협조 또는 타인에 대한 위협으로 오인**할 수 있음

※ 도전적 행동은 일반적으로 발달장애인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지칭하는 용어로, 타인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방식**일 수 있으므로 **범죄적인 고의와는 구분할 필요가 있음**

○ (발달장애인에 대한 처우 핵심) 발달장애 자체는 **질병이 아니므로 치료가 불가능하고 발현되는 행동의 관리만 가능**하기 때문에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 발달장애 특성에 맞는 놀이 치료와 사회성 기술 발달 교육 등 사회 서비스적 돌봄을 통해 예후를 개선하여 사회적응 능력 향상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나,

○ (교정시설 내 발달장애 수용자 처우 특성) 형집행기관이라는 교정시설의 본질적 특성상 발달장애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에 구조·기능적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교정시설 발달장애 수용자의 처우 방향은 비장애 수용자의 부당한 대우, 폭행, 성적 학대 등의 인권침해로부터 예방과 보호** 및 **형사·행정 절차상의 권리보장 등**이 우선 검토 대상

< 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0939800 ('23. 9. 12. 현재 심의 중) **>**

○○구치소에서 발생한 발달장애 수용자에 대한 폭행 피해 사건 수사 중 **발달장애인 보호를 위한 형사·사법 절차상 권리 안내 및 조력을 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진정 제기**

❍ (출소 시 보호 연계)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과 협의하여 **출소 시 보호 연계를 통한 사회복귀 지원 필요**

※ **지역 내 발달장애인 지원 기관**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 발달장애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

- 2022. 12. 12. 최혜영 의원 대표 발의 -

제13조의2(보호관찰 및 조건부 기소유예 등) <신설>

④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은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에 맞는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를 위한 교정에 관한 계획(이하 이조에서 "개인별 교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별 교정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법인·단체 또는 시설과 연계하여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에 적합한 교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항에 따른 교정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공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은 통상 자폐성장애인과 지적장애인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각각 사회적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이 한정된 신경발달장애이거나 지능지수가 70 이하로서 질병이 아니라 뇌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본래 치료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약물 치료나 **재활 사회화 치료**[1]**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다만, 발달장애 특성에 맞는 놀이 치료와 사회성 기술 발달 교육 등 **사회서비스적 돌봄을 통해 예후를 개선**하는 것임

그런데 치료감호 중인 발달장애인 상당수가 약물 정신치료 위주의 치료를 받고 있거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경우에도 비장애인과 함께 집단교육을 받는 형태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실효성이 없으므로 **발달장애인 관련 형사정책은 복지제도와의 결합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행동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립될 필요**가 있음

이에 발달장애인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발달장애인 개인별 특성에 맞는 교정계획의 수립·시행 및 교정 프로그램의 개발·제공을 지원하고자 함

1) 정상적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 치료

< 지역사회 내 발달장애인 지원 기관 방문 및 협의 결과 >

1 목적

○ 발달장애 수용자 처우 매뉴얼 제작에 필요한 자문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방안 등 논의

2 일시 및 장소

○ (2023. 4. 25.)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여의도 소재

○ (2023. 7. 12.)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경기도 의왕시 소재

3 협의 결과

지역사회 내 발달장애인 지원 기관에서도 피구금 발달장애인에 대한 처우 체계 부재

○ **교정시설 발달장애 수용자 처우 방향**

- 형집행기관이라는 교정시설의 본질적 특성상 발달장애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에 구조·기능적 한계가 있음
- 교정시설에 수용된 발달장애인에 대한 기본적 처우 방향은 비장애인 수용자의 부당한 대우, 폭행, 성적 학대 등의 인권침해로부터 예방과 보호 및 형사·행정 절차상의 권리보장 등이 우선 검토 대상

○ **교정시설 내 재활프로그램 운영**

- 발달장애 수용자는 개인적 특성 및 요구사항 등이 다양하고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다는 점에서 교정시설 내에서 사회성 함양 교육 등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부적합하고, 이보다는 정기적인 전문가 상담시스템을 도입 검토하는 것이 그나마 정책 실현 가능성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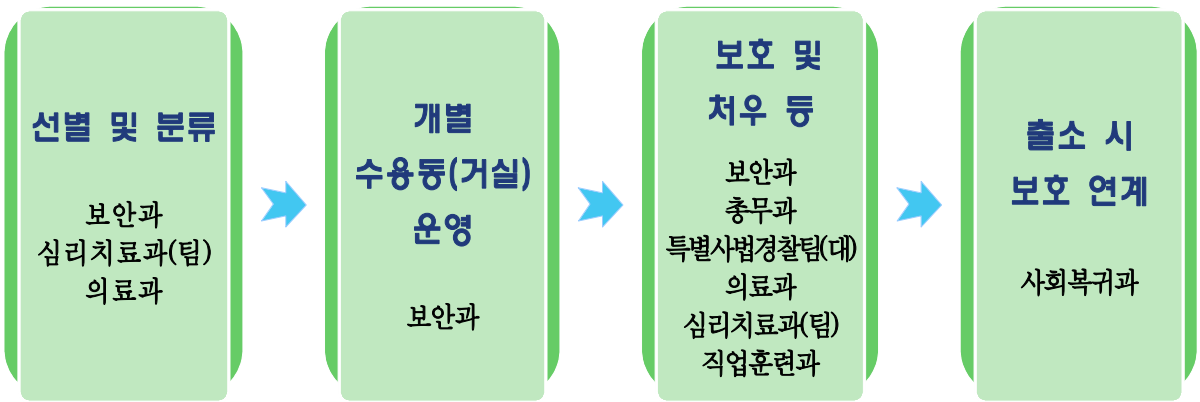
○ **직원 대상 교육**

-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직원 대상 교육에 적극 협조

○ **출소 시 보호 연계**

-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과 협의하여 출소 시 보호 연계를 통한 사회복귀 지원 필요

2 주요 업무 유형 및 처우 흐름도



발달장애 수용자 선별 및 분류	
보안과 심리치료과(팀)	발달장애 의심자 발견 시 의료과[심리치료과(팀)] 통보 및 동정관찰(상담) 기록 유지
의료과	장애인 등록증, 과거 병력 조회 등을 통해 발달장애 수용자 선별, 발달장애 등록증 발급 여부,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처우 대상자 분류, 처우 대상자 관련 부서 통보

개별 수용동(거실) 운영	
보안과	개별 수용동 또는 일반 수용동 내 개별 거실 운영 및 관리

발달장애 수용자에 대한 보호 및 처우 등	
심리치료과(팀) 보안과	상담 전담 직원 지정 및 수시 상담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전문가 상담 실시
특별사법경찰팀(대) 보안과	조사·형사 사건 전담 직원 지정 및 형사·사법 절차상 권리 안내, 교정시설 내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 규율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보안과	보호조치, 운동·목욕·접견 등에서의 적정 처우
총무과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직원 대상 교육 실시
직업훈련과	재활 및 취업과 연계된 직업훈련·작업실시
의료과	동반된 공존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

출소 시 보호 연계	
사회복귀과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출소 준비절차 지원,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협조

Ⅲ 발달장애 수용자 선별(스크리닝) 및 분류

1 발달장애 의심자 동정관찰 등 기록 및 관련 부서 통보

○ (입소 근무자) 신입자 입소 절차에서 정신건강 기초 설문 및 신체검사 결과 발달장애 의심자 발견 시 해당 수용자를 **의료과 및 심리치료과(팀)에 통보**하고 **동정관찰 기록** 유지**(1단계 스크리닝)**

○ (수용동 근무자 등) 수용동, 특별사법경찰팀(대) 관련 근무 중 발달장애 의심자 발견 시 **의료과 및 심리치료과(팀)에 통보(수용 중 수시 스크리닝)**

○ [심리치료과(팀)] (신입)수용자 상담 시 발달장애 의심자를 발견한 경우 **의료과에 통보**하고 **상담기록** 유지**[3단계(신입) 또는 수용 중 수시 스크리닝]**

2 발달장애 수용자 선별

○ (신입 수용자 선별) **신입자 건강진단 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소지 여부, 신입 수용자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유무 및 과거 병력 조회 등을 통해 발달장애 수용자 선별**(2단계 스크리닝)**

❙ 과거 병력 확인 ❙

○ 소지품을 통해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환자 진료 정보시스템**」 **조회를 통해** 수용자 과거 1년 동안의 처방 내역 등 병력 확인

○ 가족, 지인, 병원 등을 통한 유선 확인

○ 확인 불가 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의 진료로 판정

○ (발달장애 의심자 발견(통보) 시 처리) 객관적 자료(장애인 등록증, 과거 병력 등)를 통하여 발달장애인임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발달장애 의심자로 판단될 경우 **필요시 의무관 진료 등 적절한 의료 조치를 시행**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의 진료를 통해 장애 여부 진단**

장애 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관련 보건복지부 고시(장애 정도 판단기준) 참조 -	
지적장애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재활의학과·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
자폐성장애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발달장애 수용자가 일상생활에서 보일 수 있는 특성

구분	특성
지적 장애인	○ 의사소통, 대화 시 자신에 대한 표현이 어려움 ○ 상황에 쉽게 압도됨 ○ 상황에 대한 심각성 및 위험도를 인지하지 못함 ○ 자신의 장애를 감추고 숨기려 함 ○ 언어적 지시에 반응하지 않음 ○ 타인에게 쉽게 영향받거나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경향
자폐성 장애인	○ 대명사를 반전하여 사용('나', '너'를 반대로 사용) ○ 상대가 말하는 것을 따라 말하는 등 단어와 구문을 반복해서 말함**(반향어)** ○ 터치, 시끄러운 소리, 밝은 빛, 소란스러움 등에 대한 반감 ○ 말보다 제스처를 사용하거나 무언가를 가리키며 의사소통하는 것을 선호 ○ 음의 높낮이가 없는 단조로운 어투 사용 ○ 동일성 유지에 대한 강박적 욕구가 있음 ○ 팔 흔들기, 손을 퍼덕거리는 등 반복적인 신체 움직임이 보임 ○ 앞뒤로 흔들기, 서성거리기, 바닥에 앉기 등의 비정상적인 행동과 움직임을 보임 ○ 타인의 언어적, 비언어적, 기타 다양한 사회적 신호를 읽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낌 ○ 눈을 맞추는 데 어려움이 있음 ○ 통증, 빛, 소리 및 기타 자극에 지나치게 민감하거나 덜 민감함

3 발달장애인 처우 대상 수용자 분류

발달장애인에 대한 처우는 **원칙적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개정 전 장애 1~3급)**으로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한 수용자(경계성 발달장애인)라 하더라도 **의무관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장애인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용자도 대상**

❍ 발달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수용자

구분	장애 정도	장애 상태
지적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지능지수가 35 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평생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2. 지능지수가 35 이상 50 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을 받으면 복잡하지 않고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3.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자폐성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폭력·자해 등의 심각한 행동 문제로 정기적 중재가 필요한 사람(GAS 척도 점수 20 이하)
		2. 지능지수가 70 이하이고, 자조에 약간의 신체적 도움이 필요하며 행동 문제를 지도·감독하면 사회 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GAS 척도 점수 21~40)
		3. 지능지수가 71 이상이고, 자조를 위하여 언어나 신체적 지시가 필요하며 사회 활동 등에 참가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GAS 척도 점수 41~50)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관련 보건복지부 고시(장애 정도 판단기준) 참조

※ GAS 척도 : 사회생활, 직업생활, 정신적 기능을 잘할수록 100점에 가까움

❍ 경계성 발달장애 수용자(필요성 인정 시)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일반적 생활은 가능하지만 지능지수가 70 ~ 85에 해당)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계성 발달장애 수용자라 하더라도 관찰된 행태에 비추어 **의무관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장애인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용자도 발달장애인 처우 실시

❍ 발달장애 의심 수용자

- 발달장애 의심자로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의 진료를 통해 **장애 여부 진단이 필요한 수용자**

4 발달장애인 처우 대상 수용자 관련 부서 통보

○ 의료과에서는 처우 대상 수용자로 분류된 발달장애인을 보안과, 특별사법경찰팀(대), 심리치료과(팀), 직업훈련과, 기타 관련 부서에 **붙임 4 양식에 따라 통보**

※ 메모 보고로 통보하고 통보서는 전자문서 형태로 관리

○ **통보일** : 신규 대상 인원 발생 또는 발달장애인 처우 대상 수용자 이입·이송·출소, 기타 대상자 변경 시

○ **통보 인원** : 누적 인원 통보[기존 대상 인원 + 신규(이입) 대상 인원]

※ 기존 대상 인원에서 출소자, 이송자 및 기타 처우 대상 수용자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경우 등은 제외

Ⅳ 개별 수용동(거실) 운영 등

○ **일반수용자와 분리 및 혼거수용**

- **발달장애 수용자 보호, 정서적 안정 등을 위해** 일반수용자와 분리하여 개별 수용동 또는 일반 수용동 내 개별 거실에 발달장애 수용자 혼거수용

※ 발달장애 수용자가 1인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독거수용

○ **독거수용**

- 자해 또는 폭력 성향 등 **자신 및 타인의 신체적 안전을 해할 가능성**이 있어 **중점 관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일반수용자와 혼거수용**

- 수용생활 중 **다른 수용자의 도움**(간병인 등)**이 필요**한 경우, **직업재활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 기타 **사회성 함양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일반수용자와 혼거수용 가능

Ⅴ 발달장애 수용자에 대한 보호 및 처우 등

▌발달장애인의 권리 (발달장애인법 제3조)▐

◘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다.

◘ 자신에게 법률적·사실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이해하여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자신과 관련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자기의 견해와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

1 인권침해 예방 및 보호조치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및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살인, 상해, 폭행, 협박, 성폭력, 명예훼손, 모욕, 사기, 공갈 등

- 발달장애인법 제14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2조 참조 -

※ **장애인 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

발달장애 수용자가 범죄 관련 상황에서 보일 수 있는 특성

구분	특성
범죄 피해자일 경우	○ 범죄 피해에 놓일 가능성이 높으며 범죄 표적이 될 수 있음 ○ 자신의 피해를 진술할 가능성이 작거나 진술하지 않을 수 있음 ※ 특히 가해자에 대한 생계 등 **생활의존도가 높은 피해자인 경우** 피해 진술을 회피하거나 진술 이후 가해자와 분리 등의 상황이해에 어려움이 있음 ○ 자신이 받은 대우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여 범죄 피해를 받은 사실을 깨닫지 못함 ○ 가해자를 친구라고 생각하기 쉬움
범죄 가해자일 경우	○ 자신의 권리를 이해 못했지만 이해하였다고 답변할 수 있음 ○ 조사관에게 장애를 숨길 수 있음 ○ 조사관에게 인정받기 위해 조사관이 듣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함 ○ 범죄사실, 세부 사항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결백함에도 거짓으로 자백할 수 있음(범죄에 책임 있는 사람을 혼란스러워함) ○ 범죄의 가해행위가 존재하더라도 해당 범죄행위 내 범죄의 교사, 공갈 등에 의하여 피해 관계가 존재할 수 있음
공통	○ 특정 단어나 문장을 자신만의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음

❍ 전담 직원 지정

- (상담 전담 직원) **상담 전담 직원을 지정**하여 수시 상담 및 발달장애인 관련 외부 전문가 초빙 상담 등 실시

※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등에 협조 요청

- (조사·형사 사건 전담 직원) **특별사법경찰팀(대) 소속 전담 직원을 지정**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발달장애 수용자가 관련된 규율위반 행위 또는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특히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발생 시, **조사·심문,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지원 및 보호조치 등 수행**

※ 발달장애인법 제13조 제2항 참조

❍ 형사·사법 절차상 권리 안내

- 발달장애 수용자가 형사·사법 절차상 당사자(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등)로 참여하는 경우, 발달장애인법 제12조, 형사소송규칙 제126조의2에 따른 **보조인 선임, 신뢰관계인 동석 등의 절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의 **의사소통 조력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5~16의 **피해 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 및 진술 조력인 참여 절차** 등 안내

▌관련 법률▐

< 발달장애인법 >

제12조(형사·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② **발달장애인이 재판의 당사자가 된 경우** 그의 보호자, 제33조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 한다)의 직원이나 그 밖에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③ 법원은 **발달장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발달장애인 본인, 검사, 보호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④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2항 및 제3항을 따라야 한다.**

< 형사소송규칙 >

제126조(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① 법 제276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는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그 밖에 피고인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⑥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 >

제59조의15(피해 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장애인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59조의16(진술조력인의 참여 등) ①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은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라 한다)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조사·검증 또는 증인 신문을 위하여 **직권이나 피해자 또는 제59조의8제1항에 따른 보조인(이하 이 조에서 "보조인"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 검증 또는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7조(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제35조(진술조력인 양성 등) ① 법무부장관은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을 위하여 진술조력인을 양성하여야 한다.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제998호)」 참조

제36조(진술조력인의 수사과정 참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피해자를 조사하기 전에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교정시설 내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

- (형사절차 준수) 발달장애인법 제12조 제4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5~16에 따른 **보조인 선임, 신뢰관계인 동석, 의사소통 조력인, 피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변호사 선임 및 진술 조력인 참여 등의 절차를 준수**하여 발달장애 수용자가 형사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 보장

※「민법」제9조, 제12조, 제14조의2에 따라 **법원에 의하여 후견인(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이 선임된 경우**, 보조인 선임, 신뢰관계인 참여 등 **형사절차를 후견인에게도 반드시 고지**

- (조사·형사 사건 전담 직원에 의한 조사·심문) **특별사법경찰팀(대) 소속 전담 직원을 지정**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발달장애 수용자가 **관련된** 형사법령 저촉 행위에 대해 조사·심문

- (상담 전담 직원 동석) 발달장애 수용자에게 변호사, 신뢰관계인, 진술조력인 등이 없는 경우 **상담 전담 직원이 동석**하여 의사소통 중개 또는 보조

발달장애 수용자 범죄 관련 조사 시 조치 사항

유의점	조치 사항
사전 기록 검토 등을 통해 발달장애인 여부 확인	○ **미등록 장애인도 등록 장애인과 동일한 지원이 필요**하므로, 조사 전 기록 검토 및 면담 등을 통해 장애인 여부 확인 ※ 미등록 장애인 : 발달장애 의심 수용자, 발달장애인 처우 필요성이 있는 경계성 발달장애 수용자 ○ 조사 중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의료과, 가족, 장애인 유관기관 등을 통해 피조사자 장애 유무 적극 확인
보조인, 신뢰관계자 동석 여부 확인	○ 보호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 그 밖에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보조인, 신뢰관계인으로 선임 가능 ○ **피의자** 조사 시 신뢰관계자 동석이 가능함을 고지 ○ **피해자**의 경우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신뢰관계인 동석
범죄 피해장애인에 대한 진술 조력인 참여 고지	○ 피해 장애인이 의사소통·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 조력인 참여 가능 ※ 성폭력처벌법 제36~39조 참조 ○ 수사 시 진술 조력인 선정 여부 확인 및 선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
의사소통 조력 관련 내용 고지	○ 의사소통·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 경우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구체적인 조력 내용 안내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7조(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에 있어서의 편의 제공 등) 참조 ○ 발달장애인이 조력 받기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함
학대 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 고지	○ 변호사 선임 여부 확인,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할 수 있음을 고지 ※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2~6항 참조
조사 시 유의 사항	○ 언행에 유의하여 장애인과 친밀감을 형성하고, 사회 규범을 인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조사 ※ 다만 과도한 친밀감 형성은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어 장애 당사자별 상이한 접근이 필요함

	❍ 신뢰관계인, 진술조력인, 변호사 등 사법 지원인력의 지원 여부를 고지하더라도 발달장애인은 스스로 이들을 동석시키거나 선임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유의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에 연계 및 문의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사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발달장애 수용자 조사단계와 전략

구분	조치 사항
1 **계획과 준비단계**	❍ **정보수집을 통해 발달장애 수용자의 개인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 - 발달장애 수용자의 성격, 가족의 양육 태도, 특수 교육의 기회 제공 여부 등에 따라 한 개인이 발휘할 수 있는 기능 수준에는 상당한 개인차가 있음을 명심하고 조사 전 가능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도록 노력 **< 조사계획 수립 시 도움이 되는 정보들 >** ① 장애 유형과 정도, ② 장애 관련 시설이나 서비스 이용 여부 ③ 의사소통 방법 및 강점 파악, ④ 일상생활, 목욕, 수면, 식사 상태 등 ⑤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⑥ 이상행동 유무 및 촉발 요인, 그리고 통제 방법 ⑦ 일상생활에서의 기능 수준(수용 언어력, 표현 언어력, 시간·수·공간 개념, 인지능력 등), ⑧ 불안을 느낄 때 해소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물건(ex, 애착 인형·물건 등)
2 **조사의 실행단계**	❍ **(라포 형성)** 라포는 진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짧은 시간의 조사를 할 경우에도 라포를 형성하고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이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붙임 1 참조) ※ 라포 형성은 단순히 진술자와 친밀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래 조사자와 진술자의 역할을 주지시키는 것과 연결되는 내용임 ❍ **(진술자의 역할과 조사 규칙 설명)** 조사자는 사건의 경험자인 진술자의 정보를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 진술자의 능동적인 참여와 역할을 강조한 진술의 기본 규칙들을 설명한 후 진술 청취(붙임 1 참조) ※ 피의자와의 라포 형성과 조사 규칙 설명은 자신의 권리를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는 인권조사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피해자와 구분해야 함

❍ **진술의 오염방지를 위한 질문방식 사용**

- 기억과 암시에 취약할 수 있는 발달장애 수용자 조사 시, 개방형 질문을 통해 진술자의 자유 회상을 촉진하고, **구조화된 조사기법**으로 진술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개방형 진술 권유를 통해 **개괄적인 단서 청취** ⇨ 후속 진술권유, 단서제시 진술권유, 시간분할 진술권유를 통해 **사건에 대한 서술을 구체화**

※ **(초점 질문)** 진술자가 언급했던 정보를 단서로 제시하여 마치 깔때기에서 추출하는 것과 같이 한 주제에 대한 진술이 소진될 때까지 반복

< 질문의 유형 및 진술 구체화 단계 >

구분		예시
추상적	개방형 질문	❍ ~한 일에 대해 모두 말해 주세요.
	후속 진술권유	❍ 그런 다음 어떻게 되었나요? ❍ 그것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해 주세요.
	시간분할 진술권유	❍ ~한 날(~한 때)로 돌아가서 ~때(선행사건)부터 ~때(서술사건)까지 일어난 모든 일을 말해 주세요.
	단서제시 진술권유	❍ △△(진술자가 언급한 인물·물건·행동)에 대해 더 말해 주세요. ❍ □□씨가 △△(진술자가 언급한 인물·물건·행동)라고 이야기 했잖아요. 그것에 대해 모두 말해 주세요.
구체적	진술확인	❍ △△씨는 저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줬어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직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 제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때로 돌아가서 ~한 일에 대해서(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등) 말해 주세요.

※ 발달장애인 진술 완료 시, "아! 그랬군요!", "아팠군요!" 등 촉진어 사용

- 발달장애 수용자는 질문을 이해하고 답변을 생각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여유를 갖고 차분히 경청하며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제공**
- **진술자의 장애가 심각한 경우** 개방형 질문이 항상 용이한 것은 아님 (자유 회상에 의한 시간적 서술이 어려울 수 있음) ⇨ 이때는 **단서를 제시하며 초점화된 질문 사용**
- 타임라인, 도표 등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진술 지원**

	※ **시각 자료** : 한 개의 사건 안에서 진행 순서와 경과에 대해 확인 가능한 자료 또는 사건이 여러 건인 경우 각 사건 구분 및 시간·공간별로 배열하여 진술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 ○ **조사의 마무리** - **(요약 및 검토)** 진술자에게 진술의 내용을 요약해 주고, 수정 혹은 내용이 누락되어 추가할 진술이 있는지 확인 ⇨ 이를 통해 조사자는 종료 타당성 점검 및 얻어진 정보의 명료화 가능 - **(조사의 종료)** 가·피해자 모두 조사 참여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고, 진술자에게 향후 사건 진행과정 및 권리내용에 대한 정보 안내
3 **조사의 평가단계**	○ 평가는 조사의 한 단계로 조사가 효과적으로 완성되려면 조사자가 조사하는 이유를 명확히 알고 그에 맞는 방법을 찾아 이행하며, 조사 결과를 함축하여 평가함 ◈ **(확보한 정보 평가)** 계획한 목표 달성 여부, 추가 조사사항 확인 등 ◈ **(당해 수사에서 이미 확보한 정보 재평가)** 입건할 증거 여부, 수사 대상 배제 검토 등 ◈ **(조사 수행 평가)** 개선점은 무엇인지, 또 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등

○ 규율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 (조사·형사 사건 전담 직원) **특별사법경찰팀(대) 소속 전담 직원을 지정**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발달장애 수용자가 **관련된** 규율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 (상담 전담 직원 동석) 발달장애 수용자가 징벌대상자가 된 경우뿐만 아니라 피해자인 경우에도 **상담 전담 직원을 동석**하게 하여 의사소통 중개 또는 보조

※ **징벌대상자** : 징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형집행법 제110조 제1항)

○ 보호조치 등

- (격리 및 치료) 발달장애 수용자가 **형사 피해자 또는 규율위반행위 피해자인 경우** 가해 수용자와 즉시 격리 조치하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과에 통보하여 적절한 의료처우 실시

- (수시 상담) 상담 전담 직원은 상담 시 발달장애 수용자에 대한 **학대·폭행·성폭력 등의 피해 발생 및 기타 차별행위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상담기록 유지 → 필요시 관계 부서에 통보

○ **직원 대상 교육**

-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문성 제고 및 인식개선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직원 대상 **교육 실시**
- 교육은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장애인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실시

2 발달장애 수용자에 대한 처우

장애인 수용자는 **장애의 정도를 고려**하여 그 **처우에 있어 적정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 형집행법 제54조 제2항 -

○ **차별금지 및 적정 배려 원칙**

- 발달장애 수용자는 교정시설 내 처우를 받음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으며**, 교정기관은 장애의 정도를 고려하여 그 처우에 적정한 배려를 하여야 함

※ 형집행법 제5조(차별금지)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제6조(차별금지) 참조

○ **운동, 목욕, 접견 등에서의 적정 처우**

- **발달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운동·목욕·접견 등의 시간 연장, 횟수 증대, 기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비장애 수용자와 차별화된 처우 검토**

○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

- **동반된 공존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의무관 또는 정신과 전문의 진료를 통해 약물치료 실시

○ **직업훈련 및 작업**

-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 및 작업 지정 시, 발달장애 정도와 수용자의 개별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재활 및 취업과 연계**된 직업훈련·작업 검토

○ **업무협조**

- 특이동정 발생 시, **근무자 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부서 간 상시 정보 공유**를 통해 긴밀한 업무협조 체계 구축

3 발달장애 수용자 도전적 상태(흥분) 시 조치 사항

○ **발달장애 수용자의 도전적 행동과 의미**

- 도전적 행동은 일반적으로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지만, **발달장애 수용자의 도전적 행동은** 개인의 욕구가 어떠한 환경에서 충족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자신만의 의사소통 수단**이며 다음과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음

○ 통제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나, 개인의 자기결정 욕구를 표출하는 하나의 방법

○ 다양한 선택과 문제해결 방안 모색이 어려운 발달장애 수용자의 입장에서는 유일하게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 의사소통의 도구이자 문제해결 방법

< 도전적 행동의 예시 >

◈ **분노발작, 반복적 운동 동작(상동행동) 등 돌발적으로 특이행동을 할 수 있음**

① 흥분했을 때 양손을 펴서 흔들기, 손가락을 눈앞에 대고 흔들거나 꿈틀거리기, 빙빙 돌거나 몸을 앞뒤로 흔들기, 반복적으로 걷거나 뛰기 등

② 귀나 눈 가리기, 눕기, 고개를 흔들거나 감정적 동요, 질문 반복하기, 노래 부르기, 흥얼거리기, 시끄럽게 하기, 정보 반복하여 말하기 등

○ 도전적 행동은 부적절한 행동으로 보일 수 있지만, 불편함·불쾌감 등 나름의 감정 표현 방식으로 이러한 행동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음을 유의

< 도전적 행동을 촉발하는 요인의 예시 >

◈ **내적 요인**

① 싫어하는 특정 생각이나 기억이 떠오른 경우, ② 심리적·육체적 고통이 심하거나 불안한 경우

③ 생리적 욕구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

◈ **외적 요인**

① 자극을 주는 소리 또는 소음, ② 누군가 발달장애 수용자에게 소리를 지름

③ 추위나 더위를 심하게 느낄 때

❍ 발달장애 수용자의 도전적 상태 시 위기 상황 축소 조치

- 즉각 제지하기보다는 행동의 원인을 파악한 후 불편함이나 불쾌함의 원인을 찾아서 제지하고, **긴장·흥분상태를 차분히 가라앉히기 위한 노력**이 필요

※ 멈추게 하려고 과도하게 제지할 경우 흥분 혹은 강도가 더 심해질 수 있음

발달장애 수용자의 긴장 · 흥분상태 완화를 위한 위기 상황 축소 조치

조치 사항	유의점 및 참고 사항
안전거리 유지	❍ 발달장애 수용자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심리적 안전거리 유지 ❍ 교도관에게도 안전 및 완충 역할 가능
침착하게 말하고 시간적 여유 두기	❍ 보통의 억양, 크지 않고, 너무 부드럽거나 자극적이지 않게 대화 ❍ 엄하고 큰 명령조 어투 사용 지양 ※ 발달장애 수용자에게는 효과가 없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긴급상황이 아닌 한 서두르지 않음
가급적 신체접촉 지양	❍ 갑작스러운 움직임이나 행동 자제 ❍ 신체접촉 시 발달장애 수용자가 교도관의 손을 잡아당기거나 쳐내는 반응을 보일 수 있음에 유의 ※ 이러한 반응은 **강제력 행사에 저항하기 위한 의도나 행태가 아니라**, 닿는 감각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음
스트레스 유발 원인 제거	❍ 발달장애 수용자는 개인의 특성마다 다를 수 있지만 큰 소리, 밝은 조명 등 기타 자극에 과민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조용한 공간으로 이동하는 등 자극을 줄 수 있는 촉발요인 제거

- 흉기 소지 또는 극렬한 저항과 같은 일부 상황에서는 위기 상황 축소 조치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이외의 상황에서는 **발달장애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물리력 사용은 신중하게 검토**

 ⇨ 위기 상황 확대 방지가 우선

- **발달장애 수용자가 진정 후**, 심신의 공허함과 우울감 등을 경험할 수 있으므로, 심리적 안정을 위한 편안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

❍ 위험 상황 시 물리적 개입 검토

- **위험 상황이란**, 발달장애 수용자의 도전적 행동이 **① 자해, ② 타해, ③ 기물파손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음

※ 모든 도전적 행동을 위험 상황으로 정의하지 않음에 유의

- **물리적 개입이란**, 발달장애 수용자의 도전적 행동으로 위험 상황이 발생한 때 그 사람의 권리나 이동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뜻함

※ 움직임이나 이동을 제한하거나 규제하기 위해 직접적인 신체적 물리력을 가하여 도전적 행동에 반응하는 방법으로 정의되며, ▸**약물을 사용한 제지**, ▸**도구**(보호장비, 보안장비, 무기 등)**를 사용한 제지**, ▸**신체적 제지**, ▸**격리가 포함됨**

- **물리적 개입 요건은** ① 급박성, ② 필요성, ③ 보충성

급박성	본인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기물파손 **위험 등이 큰 경우**
필요성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물리적 개입
보충성	물리적 개입 이외에 행동을 제한할 수 있는 **대안이나 방법이 없는 경우**

- 물리적 개입 시, 개입 요건을 인정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록 유지**

Ⅵ 출소 시 보호 연계

○ 출소 준비절차 지원

- 사회복귀과에서는 출소 후 발달장애 수용자의 일상 및 사회생활 적응을 위해 가족 등 보호자 지원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고, **출소예정자 및(또는) 보호자 등의 동의**를 받아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지부 등과 연계하여 출소 준비절차 지원**

※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관에서는 수용자 출소 2개월 전 지원센터에 유선 연락하여 일정 조율, 출입 및 상담 등의 지원 필요

→ 개인별 지원계획이 모든 출소예정자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사전 협의

< 발달장애인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보호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의 보호자(발달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나.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
 다.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이 아닌 사람 중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같은 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
 라. 성년인 발달장애인 중 나목 및 다목의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나목에 따른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

제18조(복지서비스의 신청) ① **발달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 및 서비스(이하 "복지서비스"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른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를 **스스로 신청**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55조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2.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지원,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가족지원,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지원,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지원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문화·예술 등 복지지원
3.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 지원, 제29조의2에 따른 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지원,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및 제32조에 따른 휴식지원 등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비스

② **발달장애인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의 신청은 발달장애인의 신청**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발달장애인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발달장애인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신청은 발달장애인의 신청**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자는 해당 발달장애인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인별 복지서비스에 관한 제공계획(이하 "개인별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줄 것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대상, 복지서비스 및 개인별지원계획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신청받은 경우 대상자 선정 여부 및 복지서비스 내용을 결정하여 제33조제2항에 따른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의뢰하여야 한다.

○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협조

-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발달장애인과 가족에게 생애주기별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협조**

❙신청 방법❙

○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지원 대상❙

○ 장애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장애인)

❙지원 내용❙

○ 발달장애인 개인별 복지서비스에 관한 제공계획 수립

○ 발달장애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 정보제공

○ 개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연계

○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관리 지원 등

Ⅶ 행정사항

○ (전국 교정기관) 본 매뉴얼을 참고하여 각 기관 실정에 맞는 자체 「발달장애 수용자 처우 계획」을 2023. 10. 31까지 수립 및 시행

※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문성 제고 및 인식 개선을 위한 2023년도 직원 대상 교육은 '23. 12. 31.까지 실시

○ (법무연수원 교정연수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조사·상담 능력 제고를 위해 '24년부터 「**발달장애인 전담수사관 인권감수성 향상 과정**」 편성

붙임 1. 발달장애인과 의사소통 방법

2. 장애인 수용자 처우 관련 규정

3.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기관 정보

4. 발달장애인 처우 대상 수용자 통보서(양식). 끝.

붙임 1 발달장애 수용자와 의사소통 방법

<table>
<tr><th>유의점</th><th>조치 사항</th></tr>
<tr><td>장애 정도 파악</td><td>○ 발달장애인은 개인마다 장애 정도와 특성에 차이가 있음을 상기하고, 본인·보호자·관련 기관 등을 통해 정보를 최대한 파악</td></tr>
<tr><td>심리적 안정 제공</td><td>○ 발달장애 수용자에게 교정시설은 낯선 환경이므로 심리적 안정 유지 노력 필요
⇨ ① 불안감 촉발 원인(소음 등)을 제거하여 주의 집중력 유지, ② 긍정적인 관심, ③ 적극적인 경청 자세, ④ 장소 이동 등 환경변화 발생 시 상황 설명</td></tr>
<tr><td>자연스러운 대화, 대화 톤</td><td>○ 먼저 인사하는 등 호의적인 태도와 의사를 표현
⇨ ① 최대한 쉽게 이야기, ② 이해 못 할 경우 반복하여 차분히 설명, ③ 적절한 목소리 크기와 톤 유지, ④ 천천히 경어를 사용한 대화</td></tr>
<tr><td>라포 형성</td><td>○ 라포는 진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짧은 시간의 조사를 할 경우에도 라포를 형성하고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이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
※ 라포 형성은 단순히 진술자와 친밀해지는 것이 아니라 조사자가 진술자에게 나쁜 감정이 없고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것이며, 조사자와 진술자의 역할을 주지시키는 것과 연결됨
- 발달장애 수용자를 만나는 시점부터 라포 형성 시작
- 언어적 요소 이상으로 비언어적 요소의 사용이 중요함
<table>
<tr><th colspan="3">라포 형성을 위한 기본 요소</th></tr>
<tr><th>비언어적 요소</th><th>언어적 요소</th><th>안심시키기</th></tr>
<tr><td>① 자세 및 몸의 방향
② 피조사자와의 거리
③ 얼굴 표정 / 눈 맞춤
④ 피조사자 성향과 부합 정도
⑤ 피조사자와의 전체적 조화</td><td>① 목소리 톤 / 말의 속도
② 촉진어 및 지지적 표현 사용
③ 끝말 따라하기 / 요약하기
④ 바꾸어 말하기
⑤ 후속 질문</td><td>① 진술자가 걱정하는 부분에 대응</td></tr>
</table>
- 라포 형성은 교도관이 발달장애 수용자의 에너지 수준에 맞춤
※ 목소리 톤, 눈맞춤 등 고려(ex, 눈맞춤은 중요하지만 이를 불편해하는 발달장애 수용자에게 지속적으로 눈맞춤을 독려할 경우 오히려 불편감 야기)
- 사건 정보 탐색뿐만 아니라 대상자에게도 관심이 있음을 표현
※ 진술자의 복지에 대한 관심 표현 및 촉진적 표현 사용(ex, “아! 그랬군요!” 등)</td></tr>
<tr><td>시간적 여유 제공</td><td>○ 발달장애 수용자는 질문 처리 및 답변이 오래 걸릴 수 있음을 유의
⇨ ① 대답을 듣고자 할 때 시간적 여유를 가짐
② 대화를 끊고 질문을 반복하거나 지시하는 투의 질문 삼가
③ 질문과 다른 답변 및 비현실적 답변 시 휴식 후 재개</td></tr>
<tr><td>시각적 단서 사용</td><td>○ 언어 표현 외 시각적 단서(그림, 사진, 보완 대체 의사소통 등) 사용</td></tr>
<tr><td>요점 정리</td><td>○ 대화 시 정보량이 많으면 어려워할 수 있으므로 간단명료한 표현으로 전달</td></tr>
</table>

<table>
<tr><th>유의점</th><th>조치 사항</th></tr>
<tr><td></td><td>
<table>
<tr><th>복잡한 언어</th><th>권고 대체 문장</th></tr>
<tr><td>○ 아까 같이 왔던 그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하기를 “□□□씨가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그에 대해서 원하는 것을 해주라”고 했어요.</td><td>○ 아까 같이 왔던 분이 □□□씨한테 물어보래요. 뭘 원하는지. “뭐를 하고 싶으세요?”</td></tr>
<tr><td>○ 그 사람이 몇 시에 당신의 얼굴을 폭행하였나요?</td><td>○ 그 사람과 있었던 일에 대해 말해 주세요?</td></tr>
</table>
</td></tr>
<tr><td>기본 규칙 정하기</td><td>○ 교도관이 묻는 것에만 대답한다면 불충분한 진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진술자의 역할을 강조하여 알려주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진술의 기본 규칙을 안내한 후 진술 청취

- 규칙 1
① 빠짐없이 아주 자세히, 사실대로 말하기, ② 가해자인 경우 불리한 진술에 대답하지 않을 수 있음을 설명

◈ 스스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중심으로 진술할 수 있으므로, 사건의 전반적인 부분을 모두 말해 달라고 제시할 필요가 있음
예시) ☞ 그날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해주시겠어요?
☞ 말하기 싫으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가해자인 경우)

- 규칙 2
암시와 기억의 문제해결을 위한 규칙을 정하고 이를 설명

◈ 발달장애 수용자는 암시, 기억의 문제를 겪거나 교도관에게 순응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어 진술 전 규칙을 정하고 설명
⇨ ① 경험한 사실대로 말하기, ② 질문을 이해 못한 경우 “이해가 안 돼요.”라고 말하기, ③ 모르면 “모른다.”라고 말하기, ④ 교도관이 잘못 이해하면 ‘고쳐주기’</td></tr>
<tr><td>단어 표현</td><td>○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적, 추상적 단어(속담, 비유적 표현, 수사 관련 단어, 한자어, 영어 등) 및 이중부정 언어 사용 지양

<table>
<tr><th>구분</th><th>복잡한 언어</th><th>권고 대체 문장</th></tr>
<tr><td rowspan="2">이중부정</td><td>○ 그거 하지 마세요!</td><td>○ 이렇게 해주세요!</td></tr>
<tr><td>○ 소리 지르지 마세요!</td><td>○ 조용히 하세요!</td></tr>
<tr><td rowspan="2">추상적 표현</td><td>○ 나, 너, 당신</td><td>○ △△씨(이름 호칭)</td></tr>
<tr><td>○ 잠시, 상당히, 꽤</td><td>○ ~시에, ~만큼 등 기준점 제시</td></tr>
</table>
</td></tr>
<tr><td>의도 확인</td><td>○ 발달장애 수용자는 상대방의 질문에 무작정 동조하거나 똑같이 대답하는 경우가 있어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응답하려는 내용이나 이해하고 있는 바를 반복하여 정확히 확인
⇨ ① 동일한 대답(예, 아니오)이 무조건 반복될 수 있어 교도관의 질문을 이해하였는지 질문의 형식을 바꿔가며 재확인, ② 유도신문은 자제</td></tr>
</table>

붙임 2 장애인 수용자 처우 관련 규정

< 형집행법 >

제54조(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처우) ② 소장은 **장애인수용자**에 대하여 장애의 정도를 고려하여 그 처우에 있어 적정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 형집행법 시행규칙 >

제49조(정의) "장애인수용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각·청각·언어·지체(肢體) 등의 장애로 통상적인 수용생활이 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수용자를 말한다.

제50조(전담교정시설) ① 법 제57조 제6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장애인수형자**의 처우를 전담하도록 정하는 시설(이하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장애 종류별 특성에 알맞은 재활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제43조 제1항을 준용한다

제51조(수용거실) ①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이 아닌 교정시설에서는 **장애인수용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거실을 지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장애인수용자의 거실은 시설부족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건물의 1층에 설치하고, 특히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변기 등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제52조(전문의료진 등)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의 장은 장애인의 재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료진과 장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3조(직업훈련)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의 장은 장애인수형자에 대한 직업훈련이 석방 후의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의 편성 및 운영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제54조(준용규정) **장애인수용자**의 장애정도, 건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부식 등의 지급, 운동·목욕 및 교육·교화프로그램·작업**에 관하여 제45조·제46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제45조(주·부식 등의 지급) 소장은 노인수용자의 나이·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 제10조, 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수용자의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주·부식, 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6조(운동, 목욕) ① 소장은 노인수용자의 나이·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영 제49조에 따른 **운동시간을 연장**하거나 영 제50조에 따른 **목욕횟수를 늘릴 수 있다.**

② 소장은 노인수용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 목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도관, 자원봉사자 또는 다른 수용자로 하여금 목욕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48조(교육·교화프로그램 및 작업) ① 노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의 장은 노인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하게 하는 등 노인수형자의 교육 받을 기회를 확대하고, 노인전문오락, 그 밖에 노인의 특성에 알맞은 교화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노인수용자가 **작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나이·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수용자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작업을 부과한다. 이 경우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붙임 3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기관 정보

구 분	전화번호	주 소
중 앙	02)3433-074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7층
서울특별시	02)2135-3635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69(경운동 서원빌딩) 서원빌딩 4층
부산광역시	051)714-7360	부산광역시 동구 조방로 14, 동일타워 8층 808호
대구광역시	053)719-0340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648 SHL 동성빌딩 8층
인천광역시	032)715-4363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357, 한국교직원공제회 인천회관 7층
광주광역시	062)714-3352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시민로 103 상무비즈센터 302호
대전광역시	042)719-1085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118 대전도시공사 3층
울산광역시	052)710-3154	울산광역시 중구 번영로 470 중울산새마을금고 6층 B-4호
세종특별자치시	044)414-9172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로14, 새롬종합복지센터 2층
경기도	031)548-1393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130 누림센터 304호
강원도	033)817-2357	강원도 춘천시 옥산포길 17-8(사농동)
충청북도	043)716-2163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34 세중테크노밸리 109,110호
충청남도	041)415-1215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3(충남타워)7층 704호
전라북도	063)714-261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45 7층 702호
전라남도	061)802-1062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82 전문건설회관 4층
경상북도	054)805-7310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천년숲서로 7-19, 화인비즈니스타운 601호
경상남도	055)716-239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63 오피스 프라자 609호
제주특별자치도	064)803-37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33, KT&G 제주 본부 3층

붙임 4 발달장애인 처우 대상 수용자 통보서

연번	통보일	성명 (칭호 번호)	성별 (생년월일)	죄명 (형명·형기)	최초입소일 형기종료일	발달장애 종류	동반 정신질환 (투약 여부)	보호자 (인수 의사)
1	'23. 10. 20.	홍길동 (1225)	남 (871021)	절도 (징역 2년)	'23. 1. 1. '25. 12. 31.	지적 / 자폐 중 택일	우울증 (○)	부모 (○)
	등록 발달장애인 / 경계성 발달장애인 / 발달장애 의심자 중 택일							
2								
3								
4								
5								
6								
7								
8								
9								
10								

< 유의 사항 >

○ **통보일 :** 신규 대상 인원 발생 또는 발달장애인 처우 대상 수용자 이입·이송·출소, 기타 대상자 변경 시

○ **통보 인원 :** 누적 인원 통보[기존 대상 인원 + 신규(이입) 대상 인원]

※ 기존 대상 인원에서 출소자, 이송자 및 기타 처우 대상 수용자로 관리되고 있지 않는 경우 등은 제외